

# 『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 외 10명

### 2. 제안이유

- 인문학 진흥 위원회의 전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인문학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위탁·운영 규정을 신설·정비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  - 구미시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 → 구미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
- 인문학 사업의 위탁·운영(안 제16조 신설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인문학 진흥 위원회의 명칭을 인문학 진흥심의위원회에서 인문학 진흥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, 인문학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임.

### ○ 검토 결과,

- 사전에 집행기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인문학 진흥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구미시 인문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